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9-47
----------	-------

2019. 5. 15.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건축과)

나. 제 출 일 : 2019. 5. 1.

다. 회 부 일 : 2019. 5. 3.

2. 제출이유

화재에 취약한 일반 가정집에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할 때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구조설비 설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자. 관리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차. 환수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19. 3. 14.~ 4. 3.(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배경

소방시설법에서는 피난기구를 특정소방대상물<sup>5)</sup>의 한하여 모든 층에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다가구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주택 주거시설에 대하여 소방·경보 시설뿐만 아니라 피난구조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1. 공동주택 : 아파트 5층이상, 기숙사
2. 균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등
3. 문화 및 접회시설 : 공연장, 접회장, 관람장 등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5. 기타, 은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현재 마포구 주택 현황은 136,280호이며 그 중 소규모 주택인 단독, 다세대·연립, 다가구는 71,589호로서 그 비율이 약 53%임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외 일반세대에 화재 발생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사업 차원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마포구 주택 현황>

구 분	총 수	동 수	총 가구수 (호 세대)	비고
합 계			136,280	
단독	지상2층 이하	6,529	6,529	
	지상3층	663	663	
	지상4층	284	284	
	지상5층 이상	86	86	
다가구	지상2층 이하	1,853	7,264	
	지상3층	2,044	13,017	
	지상4층	657	3,517	
	지상5층 이상	247	1,226	
다세대	지상2층 이하	796	4,271	
	지상3층	621	4,329	
	지상4층	973	7,952	
	지상5층	1,552	14,552	
	지상6층 이상	116	1,510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지상2층 이하	-	-	
	지상3층	-	-	
	지상4층	4	30	
	지상5층	31	330	
	지상6층 이상	103	1,386	
연립주택	지상2층 이하	133	738	
	지상3층	190	1,699	
	지상4층	85	1,336	
	지상5층 이상	14	252	
아파트	지상5층	22	618	
	지상6층 이상	878	64,691	

#### 나. 주요 조문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도심 주택화재 발생으로 인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는 경우가 생김에 따라 더 이상 화재 안전의 책임이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사회 공공성이 대두되는 시점으로 구민 안전 보장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바람직해 보임.

- 다만, 안 제2조의 “화재안전취약주택”과 “피난구조설비”의 정의 규정은 구민 53%이상이 거주하는 주택형태에 대하여 취약주택으로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제정·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의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범위인 “화재안전취약가구”와 혼돈 사용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조제2호 “피난구조설비”의 정의를 완강기, 지지대, 표지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소방시설법에서는 피난구조설비<sup>6)</sup>를 피난기구<sup>7)</sup>,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내 지상 3층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 현황은 약 5만 세대로서, 완강기 설치 단가(최고18만원/개~최저13만원/개)를 고려했을 때, 지원 신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나, 총 4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2. 지원대상 소규모 주택 현황>

구 분	단독(다중포함)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동 수	1,033	2,948	3,297	289
호(세대)수	1,033	17,760	28,703	3,287

#### 다. 종합 의견

- 현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

6) 법 제15조 관련(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피난구조설비(가.피난기구 나.인명구조기구 다.유도등 라.비상조명등 마.휴대용 비상조명)

7)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호)]

하고 있는 바,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기 보다는 개정을 통해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의 목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 아울러, 구민 화재예방 및 안전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사업에서 선별적 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법으로 향후 신축 소규모 주택 등이 소방시설법상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및 법령 개정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